##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6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0.

발 의 자:김원이·김형동·이건태

이정문 · 손명수 · 이주영

최수진 • 전진숙 • 문금주

김선민 · 백승아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의약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,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%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.

특히,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,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.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-뷰티로 주목받고 있음.

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'화장품의 날'로 지정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조의3(화장품의 날) 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 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,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·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조의3(화장품의 날) ① 화장품
	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
	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
	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
	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
	<u> 정한다.</u>
	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
	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의 취지
	에 맞는 행사, 교육 및 홍보를
	실시하거나 관련 법인·단체의
	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	③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
	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	<u>한다.</u>